

# 저작권법상 긴급 차단제도 도입과 사이트 차단 of 법적 쟁점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Emergency Blocking System and Website Blocking in the Korean Copyright Act

이 학 준\*  
Lee, Hakjun

### 목 차

- |                      |                       |
|----------------------|-----------------------|
| I. 서설                | V. 주요 해외 국가의 사이트 차단제도 |
| II. 현행제도의 개관         | VI. 개선 방안의 모색         |
| III. 긴급 차단제도의 헌법적 쟁점 | VII. 결론               |
| IV. 긴급 차단제도의 행정법적 쟁점 |                       |

본 연구는 해외 서버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사이트로부터 콘텐츠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긴급 차단제도'를 검토하여 사이트 차단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현행 체계는 불법정보 규제와 심의·시정 요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절차적 소요로 인해 초기 피해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위법성 판단과 접속차단을 신속히 명령하는 구조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및 국외 정보 접근권을 직접 제한함으로써 인해 사전검열 금지와 적법절차 원칙의 관점에서 과잉차단 및 자의적 집행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불명확한 차단 기준과 미흡한 투명성은 긴급 차단이 사실상 검열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법적으로도 긴급 차단명령의 처분성, 권한의 법률상 근거, 그리고 사후구제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는 침해의 명백성과 회복곤란한 손해의 급박성을 법률상 요건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독립적·전문적 심의

<https://doi.org/10.35148/ilsilr.2026..63.121>

투고일: 2026. 2. 25. / 심사완료일: 2026. 3. 24. / 게재확정일: 2026. 3. 24.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품질관리실 전문위원  
Expert Advisor,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기구에 의한 즉시 사후심사와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차단 범위·사유의 공개, 통계보고 및 외부평가를 통해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요 해외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단명령 중 하나인 동적 차단 논의를 참고하여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기간 및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되 비용부담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검열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긴급 차단은 예외적 수단으로서 최소침해원칙 아래 투명한 절차적 통제를 통해 실효성과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우리 문화산업 내 저작권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긴급 차단제도,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

## I. 서설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현대사회에 있어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OTT 영상, 웹툰 등의 분야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저작권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sup>1)</sup>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저작권 보호의 실질적 대응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당국의 추적과 차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불법 사이트가 우후죽순 등장하는 실정이다. 불법 복제물이 한 번 온라인에 유포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권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높으므로, 저작권자들은 현행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수단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와 입법부는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응을 모색하였고, 그 중심에 긴급 차단제도의 도입 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 긴급 차단제도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 등 국내 법집행이 어려운 불법사이트에 대해 행정당국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2025년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sup>2)</sup>

1) 김동원, “OTT, 웹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9호,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2025, 97쪽.

2)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5125호)」, 제430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그러나 이러한 신속 차단 조치는 표현의 자유 및 국외 정보 접근권과의 긴장 관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터넷상 불법 정보에 대한 과감한 차단이 자칫 인터넷 검열이나 과도한 표현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비롯하여 디지털 시대에는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정보 수용에 대한 규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보장의 초점이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확보하는 데로 옮겨지고 있다는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외 정보 접근권 측면에서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긴급 차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헌법적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원칙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sup>3)</sup>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대한민국 긴급 차단제도의 도입 경위와 사이트 차단의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긴급 차단제도가 어떠한 내용과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수단이 권리 보호의 실효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양 측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합헌적이고도 효율적인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현행제도의 개관

### 1. 접속 차단 및 통신심의 제도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을 통해 인터넷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이 조항에서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 불법 도박이나 마약 관련 정보, 저작권 침해 콘텐츠 등 다양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sup>4)</sup>는 이러한 불법정보를 대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라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나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 매체의 콘텐츠 전반을

<sup>1)</sup>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125/detailRP>>, 검색일: 2026. 2. 23.

<sup>3)</sup> 박진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면에서의 헌법적 문제점 분석”, 가천법학 제17권 제2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178쪽.

<sup>4)</sup> 구 방송통신위원회.

심의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구로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심의와 시정요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sup>5)</sup> 특히 방심위의 결정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행정처분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요구된다.<sup>6)</sup>

불법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사례를 식별하고 정부 산하 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신고, 이용자들의 민원 제기, 수사기관이나 관계 부처의 요청 등을 통해 문제가 되는 정보나 사이트가 발견되면, 방심위 내 통신심의소위원회 등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 결과 불법정보로 판정되면 방심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나 온라인 플랫폼에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한다.<sup>7)</sup> 차단 명령의 대상은 국내 사이트뿐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까지 포괄하는데, 특히 해외 불법사이트의 경우 국내 법집행이 어려워 접속 차단이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sup>8)</sup>

차단 대상 범위는 앞서 언급한 조항에 열거된 바와 같이 광범위한 불법정보 전반에 걸친다.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음란물과 성착취물, 불법 도박·미약류 정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정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등이 지속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최근에는 OTT 동영상이나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처럼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들도 적극적인 차단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음란물에서 저작권 침해, 안보 위해 정보에 이르기까지 차단 대상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헌법 질서와 사회 윤리를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송재은/윤석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내리는가?: ‘디지털 교도소’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8권 제1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108쪽.

7)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8) 김동원, 앞의 논문, 102-103쪽.

침해하는 정보 전반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방심위의 전체 인터넷 심의 건 중 해외 사이트 차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70% 안팎에 이르며, 국내 이용자들은 상당한 양의 국외 정보를 정부 결정에 의해 접근이 차단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sup>9)</sup> 이러한 차단 조치들은 국민의 건전한 정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그 집행 규모와 빈도 면에서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과의 긴장 관계를 야기할 것이다.

먼저는 절차적 투명성과 권리구제 수단의 부족이다. 대부분의 차단 결정은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비공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차단 목록과 사유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외부 통제와 감시가 어렵다. 차단 대상이 주로 해외 사이트라는 특성상 국내 이용자가 법적 다툼을 제기할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사후 권리구제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sup>10)</sup> 둘째, 과잉차단의 가능성이다. 불법콘텐츠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현재 방식은 해당 사이트 내의 합법적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접근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과거 한 포털 사이트의 일부 게시물이 문제 되자 그 포털의 수십만 개 전체 홈페이지가 함께 차단되었다.<sup>11)</sup> 이러한 전면적 차단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셋째,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이다. 방심위가 사법부의 판단 없이 행정절차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사이트 차단을 결정하는 구조는 자칫 헌법상 과도한 표현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방심위의 시정요구 제도가 사전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그 남용이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여 신중한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sup>12)</sup> 학계에서도 현행 임시조치·차단제도가 적법절차의 충분한 보장 없이 인터넷상의 표현물을 지나치게 쉽게 차단할 수 있어 헌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sup>13)</sup> 인터넷상에 공개된 글이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삭제·차단될 수 있는 현실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사회 여론 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지적되는 점은 심의의 주관성 및 남용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4, 107쪽.

10)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35689 판결.

11) 윤종수, “인터넷 필터링(Internet Filtering)에 대한 검토”, 정보법학 제8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04, 8쪽.

12)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결정.

13)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09, 259쪽.

가능성이다. 방심위의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심의위원 주관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sup>14)</sup> 더 나아가 방심위 위원 임명이 정부·여당 위주로 구성되는 현실 때문에 심의 결과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되어 왔다.<sup>15)</sup>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현행 접속차단 및 통신심의 제도는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남용 방지 장치 마련,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견제 메커니즘 강화 등이 향후 개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 2. 긴급 차단제도 도입의 경위 및 주요 내용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하에 여러 건의 법안을 통합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단속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 권한 강화, 형벌 상향(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의 광범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 조치들이 포함되어 2026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종합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긴급 차단제도는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된 제133조의4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권 등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고 있는 경우, 해당 침해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긴급 차단)을 즉시 발할 수 있게 되었다.<sup>16)</sup> 종전에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차단 조치가 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나, 긴급 차단제도 도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직

14) 김재영,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 심의 실태 비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분석”, 방송문화 2015년 여름호, 한국방송협회, 2015, 155쪽; 박진우, 앞의 논문, 172쪽; 황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공정성 문제 및 개선방안”, 홍익법학 제24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357쪽.

15) 송중현/윤성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심의활동 분석: 제3기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7, 125쪽.

16) 저작권법 제133조의4(긴급 차단) [시행일: 2026. 5. 11.]

접 신속하게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정상의 즉시 차단권한에는 남용 방지를 위한 사후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다. 긴급 차단 명령이 내려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차단된 불법복제물 등의 게시자나 관련 책임자는 차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차단 조치는 즉시 해제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sup>17)</sup> 한편, 장관의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긴급 차단 대상이 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정식 접속차단 조치의 필요성을 심의하게 된다. 반대로 심의위원회가 차단 해제를 의결하면 장관은 즉시 긴급 차단 조치를 해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sup>18)</sup> 차단 해제가 확정된 경우에는 긴급 차단 조치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었다. 나아가 긴급 차단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이의제기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III. 긴급 차단제도의 헌법적 쟁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접속차단 및 통신심의 제도와 긴급 차단제도는 크게 ①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의 부재, ② 과잉차단의 가능성, ③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 침해의 우려라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긴급 차단이 표현의 자유와 국외 정보 접근권에 미치는 제한 효과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그 조치가 갖는 사전억제적 성격과 과잉차단의 위험을 살펴본다. 나아가 사전 의견진술의 생략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가 헌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17) 저작권법 제133조의4(긴급 차단) [시행일: 2026. 5. 11.]

18) 저작권법 제133조의4(긴급 차단) [시행일: 2026. 5. 11.]

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sup>19)</sup> 나아가 오늘날 디지털 정보사회에서는 표현행위의 범주가 확장되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 및 수용 역시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다.<sup>20)</sup> 즉, 국내외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열람하고 공유하는 능력도 현대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다만,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정보의 양과 영향력이 과대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은 단순한 위축효과 방지의 차원을 넘어 국외 정보까지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의 보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당국에 의한 인터넷 콘텐츠 차단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되었다.<sup>21)</sup>

한편, 저작권 보호와 공익 실현의 측면에서 긴급 차단의 필요성 역시 중요한 바, 앞서 언급했듯 불법 복제 콘텐츠의 범람은 문화산업 전반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창작 의욕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는 헌법상 재산권 및 정신적 권리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법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여 피해 확산을 막을 책무도 인정될 것이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국내 법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차단 외에는 실효적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론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sup>22)</sup> 헌법재판소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통의 신속성과 복제성으로 인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운 측면”을 언급하며, 긴급 차단과 같은 즉각적 행정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용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역할을 겸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제한 조치는 사후에 사법부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긴급 차단은 행정부가 집행자이자 심판자가 되어버린다. 특히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2010년대부터 정부의 저작권 단속 명분 아래 제시된 사이트 차단 강화책들이 미국에서 위헌 논란 끝에 폐기된 SOPA 법안보다도 강력한 검열안이라고 비판해왔다.<sup>23)</sup>

19) 문재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1, 85쪽.

20) 김현귀,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법과정책 제26권 제1호, 경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49쪽.

21) 이진, “국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헌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4쪽.

22) 헌법재판소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통의 신속성과 복제성으로 인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운 측면”을 언급하며, 긴급 차단과 같은 즉각적 행정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58 결정.

## 2. 사전 검열 금지 원칙과 긴급 차단 조치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행정권이 표현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발표 이전에 차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다는 의미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검열이란 행정기관이 표현물을 발표하기 전에 제출받아 사전심사하고, 허가받지 않은 표현의 발표를 금지하며, 그 절차를 강제하는 등 일련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sup>24)</sup> 즉, 국가권력이 표현이 공개되기 전에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제도만이 엄격한 의미의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러한 검열은 법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절대적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국민이 접하는 정보와 의견을 통제하여 여론 형성을 왜곡하거나 특정 견해만 허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sup>25)</sup>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헌법 원리이다. 다만 긴급 차단 조치가 곧바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엄격한 의미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긴급 차단은 이미 인터넷상에 게시되어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발표 이전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검열제도와는 구조를 달리한다. 문제는 긴급 차단이 행정기관의 1차적 위법성 판단에 기초하여 즉시 정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사후적 조치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본고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긴급 차단이 곧 검열이라는 단정이라기보다,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절차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사실상 검열로 악용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긴급 차단 조치는 표현물이 인터넷에 게시된 이후에 비로소 행해지는 사후적인 제한으로 볼 수 있으나, 내용의 위법성을 행정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차단을 명령한다는 관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긴급 차단은 사법부의 사전 허가 없이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차단 시점에서 정식 심의 절차나 당사자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23) 오픈넷,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https://www.opennet.or.kr/14842>>, 검색일: 2026. 2. 23.

24)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결정.

25) 이노홍, “상업적 광고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론 재검토”,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21쪽.

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구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표현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엄격한 의미의 사전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검열에 준하는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례는 이러한 경계 문제를 잘 드러낸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던 웹사이트로서, 2020년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사이트 전체가 차단되었다. 당시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의 전체 차단을 둘러싸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사이트 내 게시물 중 약 70% 이상이 불법이면 전체 차단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70% 기준”과, 사이트 자체가 범죄를 위한 “불법적 공간”이라고 간주될 경우 전체 차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기준이 거론되었다.<sup>26)</sup>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준은 어느 법규나 공식 지침에도 명시되지 않은 임의적인 것들이었고, 위원들마다 편의적으로 선택함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었을 우려가 존재한다.<sup>27)</sup> 더욱이 방심위는 심의 규정이 공개되어 있을 뿐, 해당 규정을 어떠한 기준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sup>28)</sup> 차단 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판정 기준이 외부에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로 행해지는 사이트 차단 조치가 자의적 검열로 비춰질 수 있으며, 긴급 차단제도 역시 남용되거나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긴급 차단 조치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한계에 부합하도록 신중한 기준 설정이 필수적인데, 차단 대상이 되는 정보는 명백히 위법성이 드러난 표현물로 한정되어야 하며, 차단의 요건으로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실제로 입증되어야 하는 등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인 경우로 좁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절차적인 장치로서, 차단 후 즉시 독립된 심의기관의 사후 심사를 거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는 등 권리구제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조직적 통제 장치를 엄격히 운용한다면, 긴급 차단제도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불법정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는 합헌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피해 예방이라

26) 송채은/윤석민, 앞의 논문, 127쪽.

27)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28) 송채은/윤석민, 위의 논문, 136쪽.

는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명확하고 제한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긴급 차단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 IV. 긴급 차단제도의 행정법적 쟁점

### 1. 긴급 차단의 법적 성격 및 행정기관의 권한

긴급 차단 명령은 그 내용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하명행위이며, 국민의 정보접근 및 표현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침해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sup>29)</sup> 행정기관이 표현물의 불법성 판단과 차단까지 직접 수행한다는 구조는 과도한 차단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차적 통제를 두고 있다. 긴급 차단제도는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여, 행정부에 긴급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요건과 사후심의 절차를 동시에 갖춘 것이다.

### 2. 긴급 차단 절차에서의 절차적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

긴급 차단제도는 신속한 사이트 차단을 가능하게 하지만, 행정법적 절차보장의 문제를 수반한다. 사이트 차단 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의 이유와 내용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지만, 동시에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방심위를 통한 통신심의 절차 역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심위법 제26조 제2항은 방심위가 시정요구(사이트 접속차단 등)를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②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

29) 윤상필, “저작권 침해사이트 포괄적 접속차단 제도(dynamic injunction)의 법적 검토와 수용 요건”, IT와 법연구 제28호,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4, 57쪽.

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의견진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국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의 경우 당사자 통지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차단 지연 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긴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절차적 예외를 근거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sup>30)</sup>

그러나 적법절차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예외적 조치일지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사전 의견청취를 생략하였더라도 사후적인 절차적 구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다. 부득이하게 당사자의 의견진술 없이 사이트를 긴급 차단한 경우, 차단 이후라도 해당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다룰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하며, 차단 과정에서 오검열이나 과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단 대상이 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후적으로 이의제기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잘못된 조치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선조치-후심의 형태가 불가피한 긴급 차단 상황에서는, 사후 절차를 통해 늦게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권리구제를 도모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긴급 차단이 신속성을 이유로 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자의적 집행의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어떤 사이트를 어떤 이유로 차단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해외 불법정보 차단의 경우, 이용자나 국민들은 차단된 정보의 목록이나 근거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차단 범위와 내용이 불투명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기관이 차단 조치를 시행해도, 별도의 공시나 고지가 없다면 일반 이용자는 무엇이 차단되었는지 방심위 등의 발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는 절차적 투명성의 결여로 이어져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어려워지므로, 긴급 차단을 도입한다면 차단 결정 및 내역의 공개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보장의 한 요소로서 이러한 투명성 장치는 필수적이며, 국제적 논의에서도 인터넷 차단의 정당성을 위해 차단 목록 공개와 사후 보고를 권고하고 있다.<sup>31)</sup>

30) 저작권법 제133조의4.

31) 윤상필, 위의 논문, 55쪽.

셋째, 차단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의 통제가 요구된다. 긴급 차단이 허용되는 요건과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행정집행을 방지해야 하는데, 절차상 어떠한 경우에 긴급 차단을 발동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차단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도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대한 불법성이 명백하고 급박한 피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든지, 법원의 영장 또는 사후 승인을 요건으로 하여 견제장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긴급 상황이라 하더라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 정신에 비추어 중대한 한계가 있다. 학계에서도 “절차에 의한 기본권 보장” 이론을 통해, 실제적인 통제가 어려운 영역에서는 절차적 통제를 통해 행정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sup>32)</sup> 긴급 차단제도의 발동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재량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요구라 할 수 있다.

넷째, 심의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긴급 차단제도 하에서 행정부가 직접 차단 명령을 내리게 되면, 독립 심의 기능이 약화되고 행정권에 의한 직접 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방심위와 같은 별도 심의기구 없이 행정기관이 곧바로 차단하는 구조는 행정부가 곧 검열 주체가 된다는 비판을 받기 쉽고, 적법절차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긴급 차단이 필요하더라도 현재의 심의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거나 산하기관과의 이중구조를 취하기보다는, 절차를 효율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합리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방심위 내에 긴급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히 의결을 내도록 하고, 방심위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심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제도 내부의 개선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긴급성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굳이 행정부에 직접적 차단권을 집중시키지 않더라도 절차의 간소화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방심위 구성의 다양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추천·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행정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등 조직 측면에 있어서도 보완한다면, 긴급 차단조치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2) 한수용,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보장”, 중앙법학 제18권 제1호, 중앙법학회, 2016, 108-109쪽.

## V. 주요 해외 국가의 사이트 차단제도

### 1. 영국

영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이트 차단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법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 온 국가로 평가된다. 영국에서는 2010년 전후로 법원의 차단명령(blocking injunction)을 통해 ISP가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97A조로, 유럽연합 정보사회지침(InfoSoc Directive) 제8조(3)를 이행한 규정이다. 동 조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차단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ISP를 상대로 한 사이트 접속차단 명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sup>33)</sup> 이를 바탕으로 2011년 *Twentieth Century Fox v. BT* 등에서 최초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법원 차단명령이 내려졌고,<sup>34)</sup> 이후 2012년의 *The Pirate Bay*에 대한 차단 등 여러 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sup>35)</sup> 이 과정에서 법원은 명령 대상 사이트의 운영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의 대량 저작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심리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명령을 발령하였다.

영국 차단명령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개념의 도입이다. 동적 금지명령이란 초기에 차단된 사이트가 IP 주소나 도메인 이름만 바꾸어 우회할 경우 추가적인 차단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법원의 1차 명령에 명시된 특정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불법 사이트가 이후 생성될 경우 별도의 신규 재판 절차 없이도 차단명령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작권 차단명령의 근거는 CDPA 1988 s97A, 라이브/

33)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97A Injunctions against service providers

(1)The High Court (in Scotland, the Court of Session) shall have power to grant an injunction against a service provider, where that service provider has actual knowledge of another person using their service to infringe copyright.

34)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 Anor v. Newzbin Ltd* [2010] EWHC 608 (Ch) (29 March 2010).

35) *Dramatico Entertainment Ltd & Ors v. British Sky Broadcasting Ltd & Ors* [2012] EWHC 268 (Ch) (20 February 2012).

동적 차단은 *FAPL v. BT* 등에서 발전했다.<sup>36)</sup> 이는 명령 이후 해적사이트가 도메인이나 URL만 변경하여 계속 침해를 이어가는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법원이 기존 조항을 동적·포괄적 차단의 방향으로 해석해 적용한 사례이다. 이후 영국에서는 스포츠 불법중계 차단 등 실시간 침해 대응에도 동적 금지명령을 활용하여, 스트리밍 서버들을 즉각 차단하는 라이브 차단명령까지도 내려지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사이트 차단제도는 정적 차단명령에서 나아가 동적·포괄적 차단명령으로 발전함으로써, 권리 침해 행위의 변형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법적 수단을 갖추었다.<sup>37)38)</sup>

영국 법원의 차단명령 구조는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와 영국 법원 판례는 사이트 차단명령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려면 권리 보호의 실효성과 이용자 권리 침해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판시해 왔다.<sup>39)40)</sup> *L'Oréal v. eBay* 사건에서 “추가적인 동종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단명령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명령은 효과적이면서도 비례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나 표현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41)</sup> 영국 법원도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하여, 차단범위의 적정성과 부작용 방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기술적으로도 차단으로 인한 과차단을 막기 위해, 한 IP 주소에 복수의 합법 사이트가 존재하면 IP 전체를 차단하지 않고 DNS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등 세심한 조치를 취해 왔다. 실제로 *The Pirate Bay* 차단명령 당시 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IP 주소가 다른 정상적인 사이트와 공유되지 않은 경우에만 IP 차단을 허용”하고, 공유 IP인 경우 과도한 차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한 바 있다.<sup>42)</sup>

영국의 사이트 차단제도가 가지는 절차적 특징은 한국의 경우와 분명한 대비를

36) *FAPL v. BT & others* [2017] EWHC 480 (Ch) (8 March 2017).

37) Giancarlo Frosio/Oleksandr Bulayenko, “Website blocking injunctions in flux: static, dynamic and live”, *J. Intell. Prop. L. & Practice Vol. 16 No. 10*,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p. 1133.

38) Pranay Bali/Nayantara Malhotra, “To Block or Not to Block?: Analysing the Efficacy of Website Blocking Orders and Dynamic Injunctions in Combating Digital Piracy”, *Indian J. of Intell. Prop. Law vol. 11*, NALSAR University of Law, 2020, p. 190.

39) *Spiegel Online GmbH v. Volker Beck* (C 516/17).

40) *Union Des Associations Europeennes De Football v. Eircom Ltd T/A Eir & Ors* (Approved) [2020] IEHC 488 (29 September 2020).

41) *L'Oréal SA v. eBay Int'l AG*, Case C-324/09 (C.J.E.U. 2011).

42)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v.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2011] EWHC 1981 (Ch) (28 July 2011).

이론다. 우선 영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만 사이트 차단이 이루어지므로, 법적 근거와 권한의 집중이 사법부에 있다. 행정부가 임의로 웹사이트를 차단할 권한을 갖지 않으며, 모든 차단은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형태를 띤다. 또한, 영국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조항과 축적된 판례를 통해 차단 요건과 범위를 정교하게 한정 짓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등의 위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차단이 이루어져 법률유보 원칙이나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지적될 수 있다. 절차적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영국에서는 차단명령 과정에서 ISP나 제3자도 의견 제시가 가능하고 명령 후에도 이의신청이나 변경신청 절차가 열려 있지만, 한국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후적 구제 외에는 즉각적인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시정조치 이행 방식을 보면, 영국에서는 법원 명령을 받은 ISP들이 자율적으로 기술적 수단을 선택하여 이행하고 그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 어려움이 과중할 경우 법원이 고려해 주는 구조인데, 한국에서는 방심위가 표준화된 방식을 일괄 요구하고 ISP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태이다.

종합적으로 영국의 사이트 차단제도는 법에 근거한 사법절차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를 도모하는 모델로서, 동적 금지명령 등 혁신적인 기법을 활용하면서도 권리구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행정기관 주도의 신속 차단을 추구하고 있으나, 민주적 통제와 권리보장 장치 측면에서 영국에 비해 취약하다. 따라서 한국이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이트 차단 정책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영국 사례가 보여주는 법적 근거의 명확화, 사법적 심사의 도입, 투명하고 독립적인 심의체계 확보, 과도한 표현 제한 방지 장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와 헌법적 가치의 균형을 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일본

일본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호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여, 웹사이트에 대한 행정적 차단 조치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일본 헌법 제21조는 검열 금지와 통신 비밀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sup>43)</sup> 이는 정부나 사업자가 함부로

43) 昭和二十一年憲法 第二十一条 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2 検閲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秘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인터넷 정보 흐름을 차단하거나 들여다보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2018년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망가무라(漫画村)’ 사건은 이러한 원칙과 저작권 보호 필요성 간 충돌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였다.<sup>44)</sup> 망가무라는 월간 이용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불법 사이트로서 일본 출판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데, 일본 정부는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4월 해당 사이트들을 지목하여 ISP들에게 자발적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다.<sup>45)</sup>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정부는 이를 헌법상 긴급피난에 준하는 예외적 조치로 정당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ISP 차단 요청에 대하여 일본 인터넷 프로바이더협회 등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통신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sup>46)47)</sup>

망가무라 사태 이후 일본에서는 ISP 차단 명령의 도입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2018년 4월 정부 차원의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대책” 회의에서는,<sup>48)</sup>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문화산업 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할 경우 한시적으로 ISP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악질적인” 링크사이트에 대해선 별도 심의 없이도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러한 사이트의 정의와 차단 요건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① 사이트 개설 목적, ② 침해콘텐츠의 양과 범위, ③ 동일 침해자가 반복 운영하는지, ④ 다른 효과적 대응 수단이 없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해 차단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긴급 차단 권한을 법제화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병행되었다.

2020년 6월, 일본 국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개정으로 직접적인 행정 차단권을 부여하기보다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사법적·

44) 文化庁, “著作権法及び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御説明資料”, 2頁,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pdf/92359601\\_02.pdf](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pdf/92359601_02.pdf)>, 검색일: 2026. 2. 23.

45) 首相官,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サイトに対する緊急対策”, 1頁,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honpen.pdf>>, 검색일: 2026. 2. 23.

46) 日本インターネットプロバイダー協会, “ブロッキングの法律問題について”, 8頁, <[https://www.jaipa.or.jp/event/oki\\_ict2011/anshin\\_hou.pdf](https://www.jaipa.or.jp/event/oki_ict2011/anshin_hou.pdf)>, 검색일: 2026. 2. 23.

47) 穴戸常寿, “ブロッキングの法制度整備に関する憲法上の論点の検討”, 12頁,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8/kaizoku/dai4/siryou4.pdf](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8/kaizoku/dai4/siryou4.pdf)>, 검색일: 2026. 2. 23.

48) 首相官,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サイトに対する緊急対策”, 1頁,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honpen.pdf>>, 검색일: 2026. 2. 23.

사후적 규제 수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sup>49)</sup> 첫째,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한 해적판 사이트에 링크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도록 법을 정비하였다.<sup>50)</sup> 이를 통해 일명 ‘리치 사이트(Leech site)’<sup>51)</sup> 운영자를 저작권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불법 복제물의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음악·영상 등 일부 콘텐츠에 한해 불법다운로드를 금지했으나, 2020년 개정법은 만화·사진 등 모든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화하였다.<sup>52)</sup>

일본 정부와 입법기관은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 신속차단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전제로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 최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웹사이트 접속차단명령은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 아래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차단이 사전검열로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차단 필요성의 긴급성 판단은 독립적인 사전 심사(법원이나 제3의 심의기구)를 거치도록 하고, 차단 이후에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법심사를 받아 적법성을 다룰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후통제 수단은 이미 일본 내 다른 정보규제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으로서, 사이트 차단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3. 미국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사이트 차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된다. 2011년 발의된 온라인

49) 文化庁, “著作権法及び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2年著作権法改正)について(解説)”, 11頁,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pdf/92918901\\_01.pdf](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pdf/92918901_01.pdf)>, 검색일: 2026. 2. 23.

50) 文化庁, “著作権法及び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2年著作権法改正)について(解説)”, 14頁,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pdf/92918901\\_01.pdf](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pdf/92918901_01.pdf)>, 검색일: 2026. 2. 23.

51) ‘리치’는 타인에게 기생한다는 뜻의 영어 ‘Leech’에 기인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기생하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奥邨弘司, “インターネットと著作権”, 法学教室 第449号, 有斐閣, 2018, 41頁.

52) 文化庁, “著作権法及び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2年著作権法改正)について(解説)”, 19頁,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pdf/92918901\\_01.pdf](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pdf/92918901_01.pdf)>, 검색일: 2026. 2. 23.

불법복제방지법(Stop Online Piracy Act, SOPA)와 지식재산보호법(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PIPA)은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광범위한 제재를 도입하려 했으나, 인터넷이용자들의 반대로 인해 입법이 연기되었다.<sup>53)</sup> SOPA와 PIPA 법안은 미국 내 사법부와 행정부에게 외국 불법 사이트까지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검색 엔진 결과 삭제와 결제 차단, DNS 등록말소까지 규정한 강력한 내용이었지만, 위키피디아 등의 블랙아웃 시위와 구글·페이스북 등 업계의 반발로 헌법상의 검열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무산되었다.<sup>54)</sup>

현재 미국의 사이트 차단은 사전적 행정규제보다는 사후적 사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1998년 제정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은 ISP에게 침해 콘텐츠에 대한 “통지-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마련하고,<sup>55)</sup> 이를 이행할 경우 면책한다. 즉 정부가 직접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고, 권리자의 통지와 사업자의 자율적 조치에 맡겨 개별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DMCA 제도 하에서 미국의 ISP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적극적으로 불법물을 선별 차단할 일반적 의무는 없으며, 통지된 침해물에 신속히 대응하면 책임을 면한다.<sup>56)</sup> 또한 법원은 필요할 경우 특정

53) 김유향,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보호법(PIPA) 논란과 그 의미, 국회입법조사처, 2012, 1쪽.

54) Christian Yoder, “A Post-SOPA (Stop Online Piracy Act) Shift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Norm Creation”, *The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vol. 15 iss. 5-6, John Wiley & Sons, 2012, p. 380.

55) 17 U.S. Code § 512 - Limitations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b) System Caching

(2) Conditions.-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that-

(E) if the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1)(A) makes that material available online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copyright owner of the material, the service provider responds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that is claimed to be infringing upon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as described in subsection (c)(3), except that this subparagraph applies only if-

(i) the material has previously been removed from the originating site or access to it has been disabled, or a court has ordered that the material be removed from the originating site or that access to the material on the originating site be disabled; and

(ii) the party giving the notification includes in the notification a statement confirming that the material has been removed from the originating site or access to it has been disabled or that a court has ordered that the material be removed from the originating site or that access to the material on the originating site be disabled.

56) 17 U.S. Code § 512 - Limitations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d) Information Location Tools.-A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monetary relief, or,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j), for injunctive or other equitable relief,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침해 사이트에 대해 명령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2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United King Film Distribution Ltd. v. Does* 사건<sup>57)</sup>에서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법원이 피고 및 관련 중개업자들에게 사이트 운영 중단과 도메인 이전을 명령함으로써 사실상 사이트 폐쇄 효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도 모두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심의·차단하는 일부 국가와 구별된다.

#### 4. 소결

이상 주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종합하면, 사이트 차단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적 근거의 명확성, 독립적 또는 사법적 통제, 차단 범위의 비례성, 그리고 실효적인 사후 권리구제절차가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은 법원의 차단명령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과잉차단 방지를 위한 절차적 통제를 중시하고 있고, 일본은 행정적 차단권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시사점은 우리 법제에서도 긴급 차단의 발동요건을 엄격히 한정하고, 독립적인 사후심사와 이의절차, 차단 사유 및 범위에 관한 투명성 확보 장치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reason of the provider referring or linking users to an online location containing infringing material or infringing activity, by using information location tools, including a directory, index, reference, pointer, or hypertext link, if the service provider-

(1)

(A)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that the material or activity is infringing;

(B) in the absence of such actual knowledge, is not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infringing activity is apparent; or

(C)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2) does not receive a financial benefit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in a case in which the service provider has the right and ability to control such activity;

57) *United King Film Distribution Ltd. v. Does* 1-10, 21 Civ. 11025 (KPF)(S.D.N.Y. Apr. 26, 2022).

## VI. 개선 방안의 모색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긴급 차단제도는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주요 해외 국가의 사례 역시 사이트 차단의 정당성이 단지 그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와 독립적 통제, 과잉차단 방지장치,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긴급 차단제도의 도입 또는 운영에 있어서는 제도의 신속성 자체보다도, 이를 헌법과 행정법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구조화하는 개선방안의 모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긴급 차단의 발동요건은 법률상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긴급 차단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침해행위의 명백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급박성, 그리고 접속차단 외에 다른 실효적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명백성’이나 ‘긴급한 필요’와 같은 개념이 추상적으로 운용될 경우 행정기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이나 고시 수준이 아니라 법률 또는 적어도 명확한 하위 기준을 통해 판단요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긴급 차단은 선조치-후심의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제도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독립적 사후심사와 실효적인 이의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차단을 명령하더라도, 독립적·전문적 심의기구가 지체없이 그 필요성과 적법성을 재심사하도록 하고,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아가 차단 해제 절차와 손해구제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긴급 차단이 사실상 일방적이고 종국적인 정보차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긴급 차단은 과잉차단의 위험이 크므로 차단 범위와 방법을 최소침해 원칙에 따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불법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은 합법적 정보에 대한 접근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개별 URL 또는 특정 서비스 단위의 차단을 우선 고려하고, 전체 차단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어떤 사이트가 어떠한 이유와 법적 근거에 따라 차단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공개하고, 차단 통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

보고와 외부 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사례에서 논의되는 동적 차단명령이나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체계는 우리 법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참고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적 또는 독립적 통제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특히 동적 차단은 우회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의 확장 가능성만큼 과잉차단과 통제 공백의 우려도 크므로, 차단 기간·대상·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후 검증 절차를 결합하는 방식으로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기술적 이행방식, 비용부담,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검열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VII. 결론

본 연구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조를 검토하고, 그 헌법적·행정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긴급 차단은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의 제한, 과잉차단의 위험, 권리구제절차의 미비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행정기관이 위법성 판단과 차단명령을 선행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는 엄격한 의미의 사전 검열과는 구별되더라도, 불명확한 기준과 미흡한 통제 아래에서는 사실상 검열로 기능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 차단제도는 예외적 수단으로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그 정당성은 신속성 자체가 아니라 엄격한 발동요건, 독립적 사후심사, 실효적인 권리구제, 과잉차단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만 담보될 수 있다.

결국 긴급 차단제도는 저작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 운용 방식에 따라 기본권 보장의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실효성과 헌법적 정당성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절차적 통제를 통해 조화되어야 할 과제이다. 향후 입법 및 정책 이해관계자들은 신속성 못지않게 투명성과 적법성을 고려하여 제도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4.

### 2. 학술지

김동원, “OTT, 웹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9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25, 97-104쪽.

김재영,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 심의 실태 비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분석”, 방송문화 2015년 여름호, 한국방송협회, 2015, 148-160쪽.

김현귀,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법과정책 제26권 제1호, 경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27-59쪽.

문재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1, 85-110쪽.

박진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면에서의 헌법적 문제점 분석”, 가천법학 제17권 제2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157-184쪽.

송중현/윤성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심의활동 분석: 제3기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7, 103-132쪽.

송채은/윤석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내리는가?: ‘디지털 교도소’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제38권 제1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105-154쪽.

윤상필, “저작권 침해사이트 포괄적 접속차단 제도(dynamic injunction)의 법적 검토와 수용 요건”, IT와 법연구 제28호,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4, 41-72쪽.

윤종수, “인터넷 필터링(Internet Filtering)에 대한 검토”, 정보법학 제8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04, 1-40쪽.

이노홍, “상업적 광고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론 재검토”,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13-244쪽.

한수웅,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보장”, 중앙법학 제18권 제1호, 중앙법학회, 2016, 95-138쪽.

황 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공정성 문제 및 개선방안”, 홍익법학 제24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351-383쪽.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09, 253-281쪽.

奥邨弘司, “インターネットと著作権”, 法学教室 第449号, 有斐閣, 2018, 38-43頁.

Christian Yoder, “A Post-SOPA (Stop Online Piracy Act) Shift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Norm Creation”, *The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vol. 15 iss. 5-6*, John Wiley & Sons, 2012, pp. 379-388.

Giancarlo Frosio/Oleksandr Bulayenko, “Website blocking injunctions in flux: static, dynamic and live”, *J. Intell. Prop. L. & Practice Vol. 16 No. 10*,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pp. 1127-1143.

Pranay Bali/Nayantara Malhotra, “To Block or Not to Block?: Analysing the Efficacy of Website Blocking Orders and Dynamic Injunctions in Combating Digital Piracy”, *Indian J. of Intell. Prop. Law vol. 11*, NALSAR University of Law, 2020, pp. 179-204.

### 3. 학위논문

이진, “국외 정보 접근권에 대한 헌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 4. 연구보고서

김유향,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보호법(PIPA) 논란과 그 의미, 국회입법조사처, 2012.

### 5. 웹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5125호)」, 제430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125/detailRP>>, 검색일: 2026. 2. 23.

오픈넷,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https://www.opennet.or.kr/14842>>, 검색일: 2026. 2. 23.

穴戸常寿, “ブロッキングの法制度整備に関する憲法上の論点の検討”, 12頁, <<https://www>.

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8/kaizoku/dai4/siryou4.pdf>, 검색일: 2026. 2. 23.

文化庁, “著作権法及び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御説明資料”, 2頁,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pdf/92359601\\_02.pdf](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pdf/92359601_02.pdf)>, 검색일: 2026. 2. 23.

首相官,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サイトに対する緊急対策”, 1頁,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honpen.pdf>>, 검색일: 2026. 2. 23.

日本インターネットプロバイダー協会, “ブロッキングの法律問題について”, 8頁, <[https://www.jaipa.or.jp/event/oki\\_ict2011/anshin\\_hou.pdf](https://www.jaipa.or.jp/event/oki_ict2011/anshin_hou.pdf)>, 검색일: 2026. 2. 23.

[ Abstract ]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Emergency Blocking System and Website Blocking in the Korean Copyright Act**

Lee, Hakjun\*

This study examined the ‘emergency blocking system’ established to protect the rights of content copyright holders from copyright-infringing sites using overseas servers, analyzing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site blocking. While the current system operates primarily through illegal information regulation and corrective requests,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procedural delays limit its effectiveness in suppressing the initial spread of harm. The structure in which administrative agencies swiftly determine illegality and order access blocking was reviewed as potentially creating risks of excessive blocking and arbitrary enforcement,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s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know, the right to access foreign information, the prohibition of prior censorship, and due process. Particularly, unclear blocking criteria and insufficient transparency suggest that emergency blocking could effectively be perceived as censorship. Administratively, the dispositional nature of emergency blocking orders, the legal basis for authority, and the post-blocking redress system emerged as key issues.

This study proposes strictly limiting legal requirements to the clear existence of infringement and the urgency of irreparable harm, while strengthening immediate post-blocking review and rights redress procedures through independent, expert deliberative bodies. It also proposes enhancing accoun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rough disclosure of blocking grounds, statistical reporting, and external evaluation. Furthermore, drawing on discussions of dynamic blocking—one type of blocking order adopted in major overseas countries—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mid- to long-term by limiting

---

\* Expert Advisor,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the duration and scope of application under judicial oversight.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cooperation systems with internet service providers while clearly defining cost burdens and scope of liability to prevent excessive censorship responsibilities from being shifted to private businesses.

In conclusion, emergency blocking should function as an exceptional measure under the principle of minimal intrusion, operating through transparent procedural controls to ensure effectiveness and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thereby enhancing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within our cultural industries.

[Key Words] Emergency blocking system, Copyright infringement, Illegal websites, Freedom of expression, Due process